

## 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 공모

SH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서울시 빈집 해소를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 또는 리모델링하여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는 ‘토지임대부 사회주택’을 공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

### 1. 사업개요

사업명	사업내용	사업기간	비고
빈집활용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·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필지에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</li> <li>◦ 입주자 관리(공동주거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)</li> <li>◦ 주택 유지관리</li> </ul>	토지임대차  계약일로  부터  30~ 40년	

### 2. 세부 사업내용

#### ① 사업대상지(2개필지)

##### 가. 신축형 필지

구분	내용
위치	성북구 정릉동 559-132, 559-48
대지면적	343m <sup>2</sup>
용도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지역, 제2종 일반주거지역(건폐율 : 60%이내, 용적률 : 200%이내)</li> <li>- 중점경관관리구역(주요산주변중점경관관리구역)</li> </ul>

##### 나. 자율형 필지

구분	내용
위치	종로구 창신동 627-157
대지면적	68.2m <sup>2</sup>
용도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시지역, 제2종 일반주거지역(건폐율 : 60%이내, 용적률 : 200%이내), (7층이하)</li> <li>- 중점경관관리구역(역사도심)</li> </ul>



## ② 시공 요건

### ○ 적용주택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 가, 나,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, 다중주택, 다가구주택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가, 나, 다, 라목에 따른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
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조 1호와 2호, 3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, 단지형 연립주택, 단지형 다세대주택
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 나목 2)에 따른 오피스텔

### ○ 시공방식

-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으로 지역이미지 개선에 기여
- 서울주택도시공사,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제시하는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여 설계, 인허가, 시공, 각종 인증 등 수행

### ○ 품질관리 : 사업주체 및 서울주택도시공사

연번	핵심사항	공사 前 단계	공사 中 단계
1	주차대수 완화	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의 경우 아래의 조건으로 주차대수 완화 - 전용 30㎡이하: 세대 당 0.35대 - 전용 30㎡초과: 50㎡이하 세대 당 0.4대	
2	커뮤니티 연계	- 커뮤니티 공간 확보 의무 (주거전용면적의 10% 이상 30% 이하)	
3	편의 및 접근성	① 인접도로 폭 3m 이상 확보 의무 ②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 가능 의무	- 수도 및 가스제량기는 전용공간을 외부에 설치
4	친환경	① LED 등기구 권장(에너지 절감) ② 가구 환경등급 E0 이상 권장	- 보일러실, 화장실, 발코니 출입문 등 외기에 접하는 창은 이중창 설치

연번	핵심사항	공사 前 단계	공사 中 단계
5	안전성	① 모든 자재 KS마크 표시제품 권장 ② 외벽마감 비가연성 재료권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에어컨 콘센트는 별도 마련</li> <li>보일러실 전기콘센트, 가스배관 이음매와 거리 15cm 이상</li> <li>모든 급수, 오.배수, 환기 상배관 (에어콘 드레인 배관 제외)은 골조 매립시공을 금지하고 PD를 계획하여 유지보수가 가능한 구조로 계획</li> <li>[필로터 등 천정 금수배관]은 25mm 보온재 (필요시 열선), 오.배수 배관은 10mm이상 보온재를 적용 (매직테이프 마감) 하여 동파 방지</li> <li>[옥외 매립되는 급수 및 오.배수 배관의 매설] 깊이 동결심도 이하로 할 것 (급수 보온 -25mm이상, 오.배수 보온 -10mm이상)</li> <li>[보일러 하부 배관]은 보온 10mm이상 매직테이프로 계획, 동파가 우려되는 장소에는 열선 설치</li> </ul>
6	기타 설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지붕 층 방수 담수시험 실시</li> <li>외부노출 발코니의 출입이 가능한 실내도어 형식은 결로, 누수, 단열 등이 만족하도록 계획 (건축법규 및 국토교통부 고시 참조)</li> <li>모든 육실은 결로 방지 및 환기를 위한 환기휀(천정용)을 계획</li> </ul>

### ○ 비용부담 : 사업시행자

- \* 공사 진행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  
*(기존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비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후 정산부담)*
- \*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사업비 주택부분의 최대 90%까지 은행대출 지원 가능 (보증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체공사비 검토 후 결정, 신축형만 해당됨)
- \* 시공사 조건 : 30세대 미만은 신용등급 C 이상, 시공순위·실적요건 無

### ○ 착공시한 :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토지임대차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착공하여야 하고, 특별한 사유 없이 착공이 늦어지는 경우

해당 사업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 취소

### ③ 사업협약 체결

- 협약기관 : 서울주택도시공사 ↔ 적격 사업자
- 협약시기 : 서울주택도시공사 설계자문(2차) 및 자치구 건축허가 완료 직후
- 주요 협약내용
  - 토지임대료율은 매입금액(감정가)대비 연 1%(부가세별도)로 책정하고, 기간은 30년 이상 40년 이내 범위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, 매년 2년마다 재계약
  - ※ 토지임대료 인상률은 2년에 2% 이내로 제한
  - 사회주택 사후관리를 위해 평가를 실시('사회주택 인증제' 실시예정)하며,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폐널티 부여
  -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여야 함
  - 협약해지 또는 해제사유 발생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협약에서 정한 율에 따라 인수

### ④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및 대출 실행(신축사업에 한함)

- 적격 사업자 추천 : 서울시 ⇒ 한국주택금융공사
- 매입 약정 : 서울주택도시공사 ↔ (적격 사업자) (⇒한국주택금융공사 통보)
  - 매입가격 : 준공시점 건설원가  
(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원가방식에 의하여 산정)
  - 선행조건 : 최초보증금으로 보증대출원금의 30%이상 의무상환  
(매 2년마다 대출원금의 3%이상 상환)

○ 보증서 발급: **한국주택금융공사** ⇒ 하나은행(보증심사 후)

- 보증 및 대출관련 기준 건축비는 별첨 「사업비 산정 기준 건축비」에 따름
- 보증한도 : 총 사업비의 90%
- 보증대상 : 사회주택 건설 자금보증 및 임대보증금반환보증
- 보증조건 : 수수료 0.1%
  - ※ 대출금 + 임대보증금 < 건물가치(최초 건설원가)

○ 보증기간 : 15년/30년

○ 대출실행 : 하나은행 ⇒ 적격 사업자

- 대출조건 : 대출금리 CD + 1.75%(15년)  
대출금리 CD + 2.05%(30년)
- 대출기간 15년 또는 30년(분할상환)

○ 이차보전 : 서울시 ⇒ 우리·하나은행

- 최대 15년까지 사업자의 최종 부담금리가 1.8%가 되도록 대출금리를 서울시가 대출기관에 보전 (보전액의 상한은 대출 잔액의 최대 2%까지)



○ 대출시점 : 협약체결 이후

**\* 상기 금융지원관련 부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**

## ⑤ 입주자 모집 관리

### ○ 입주자 모집·선정 : 사업시행자

- ※ 사회주택플랫폼(soco.seoul.go.kr/sohouse)을 통한 입주자 모집·홍보 필수
- ※ 사업시행자와 입주희망자간 개별적 임대차계약 체결  
(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 사용)

### ○ 소득요건 :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,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%(1인) ~ 100%(2인이상) 이하

※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120%까지 완화

- 임 대 료 : 시세 80% 이하, 2년에 5%이내 인상하되, 주거비 물가지수 고려
- 관 리 비 : 입주자에게 부과내역 공개(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공개양식 제공)  
하고, 사회주택플랫폼 단위주택별 공지사항에 게시
- 거주기간 : 최장 10년 거주 가능(2년마다 재계약, 재계약 조건 없음)  
※ 서울주택도시공사(맞춤임대부)에서 감정평가를 통해 임대료 시세 확인  
및 입주신청자의 무주택여부·소득요건 조회 지원

## ⑥ 커뮤니티 공간(근린생활시설 포함) 설치·운영

### ○ 공간용도 : 입주민 생활편의시설 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 맞춤형 주거서비스 제공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또는 공공성(사회적 가치 등)을 지향하는 사업장 운영

ex) 론드리카페, 코워킹스페이스, 공동·나눔부엌, 체력단련실 등

### ○ 공간규모 : 연면적의 10% 이상 30% 이하

※ 입주자 전용 커뮤니티로 활용되는 부대복리시설을 연면적의 10% 이상 설치하여야 함.

### ○ 운영방법 : 직접 운영 또는 재임대(위탁) 가능

※ 입주민의 커뮤니티활동(모임 등)이 가능해야 하며, 재임대(위탁) 시  
임대료는 주거공간과 동일하게 시세 80% 이하로 제한

### ○ 운영조건 : 근린생활시설로 공간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본 사업지 대출금 상환 및 건물 유지보수(관리)에 재사용

## 3. 응모자격

- 「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조례」 제2조 제3호 ‘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’에 해당하는 자
  - 「민법」에 따른 비영리법인
  -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
  - 「협동조합 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  -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
  -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
 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 중 건설업, 부동산업 및 임대업,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 한함)에 해당하는 기업

### □ 시공, 설계 능력이 없는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이 가능하며,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
- 사업신청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사업신청자를 대표하는 법인(이하 “대표법인”)의 명의로 사업신청을 해야 하며, 서울시는 대표법인에 대한 통지와 협의로써 동 사업신청자에 대한 통

지와 협의를 갈음함

- 대표법인은 ‘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’에 해당하여야 함
-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각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업무가 명기된 ‘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’를 제출하여야 함
- ‘자율형’의 경우 대표법인이 직접운영관리하거나, 운영의 전문성·경험을 가진 사회적 경제주체 등이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함

#### 4. 제출서류

##### ① 사업참여 제안서 12부

- 참여 신청서
- 서약서
-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(필요 시)
-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
- 재정 건정성 및 상시인력 현황(관련 증빙서류 첨부)
  - 직전년도 세무서 발급 재무제표증명서 및 공모참여 직전월까지의 회계사나 세무사가 확인한 재무제표확인서(결산자료)
  - 사회주택 전담인력 증빙서류(경력증명서, 보험내역 고지서 등)
-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(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첨부)
- 가점 신청서(필요 시)

- 사업계획서
- 사업재무분석(엑셀서식)

※ 일부만 발췌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, 전체 자료는 파일로 제출

- 사업자등록증 사본(원본대조필)
-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

-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(대리인인 경우)

-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

③ 사업제안서(사업계획서 및 별첨서류 Scan 파일 포함) 및 발표자료(PPT형식, 15장 이내, 표지·목차·간지 제외, 누적페이지 기재)가 담긴 USB 1매

※ 심사당일 심사위원 배포용 발표자료 12부 인쇄·제출

#### 5. 공모 추진일정

구 분	일 정 및 장 소
공모 공고	2019년 5월 31일(금)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(고시공고) 게시
질의 응답	2019년 6월 11일(화) 17:00까지 이메일( <a href="mailto:hamo@shc.or.kr">hamo@shc.or.kr</a> ) 접수분만 인정함
사업신청서류 접수	2019년 6월 25일(화) 일괄접수(공사홈페이지 게시) 2019년 7월 15일(월) 10:00~18:00 직접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빙집Bank 기획부(9층)
평가위원회 개최	2019년 7월 31(수) 10:00~
사업자 선정공고	평가위원회 완료 후 7일 이내

※ 상기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되오니 일정을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재확인바랍니다.

#### 6. 심사선정

##### ○ 사업제안서 심사선정위원회 구성·개최

- 위원 : 7~8인의 전문가로 구성(빙집정책위원회 위원 참여)
- 실시일시는 심사선정위원회 심사대상 참여자에게 별도 통보(예정)

- 1개사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심의위원회 평가에 의해 선정여부를 결정함 (단, 정량적 평가기준 중 최소 조건 충족 필요)

#### ○ 심사기준

- 서류심사 및 프리젠테이션(질의응답 포함 20~30분이내, PPT 20장 이내)
- 심사기준 : 정량적 평가(20점), 정성적 평가(80점)
  - 정량적 평가 : 재정건전성, 유사사업 실적, 전담인력 규모, 커뮤니티 면적대비 입주자 전용 커뮤니티 면적비율
  - 정성적 평가 : 사업이해도 및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, 사업수행 능력, 세부계획간 연계성, 건축계획의 적정성, 커뮤니티 운영 계획, 임대운영 및 건물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

#### ○ 선정방법 :

- 정량적·정성적 평가점수를 합한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적격사업 중 최고득점 순으로 매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, 선 순위 사업의 매입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 후 순위 사업 매입 추진  
※ 단 적절한 후순위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선 순위 사업만 선정

#### ○ 결과발표 : 심사완료 후 7일 이내

-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

### 7. 기타사항
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
-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, 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,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
-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사업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

-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내용은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
-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,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
-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,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으며, 제안사간에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안을 무효로 함
- 사업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
- 사업자는 명칭표기시 SH빈집 브랜드를 포함하여 표기하여야 함
- 금번 모집공고 대상 공고 1,2,3,4호 중 총 2개까지만 지원가능하니 복수지원에 유의하시기 바람(2개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지원건은 무효처리됨)
- 단일 접수건은 추후 심사에 의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적정한 경우에만 약정 진행됨
- 토지임대료 조건 등 본 공고내용은 추후 매입약정 체결시 공사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
- 기타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빙집Bank기획부(☎6940-8625, 8631)로 문의하시기 바람. 단, 공고관련 모든 질의 내용은 서면으로만 접수받으니 [hamoo@i-sh.co.kr](mailto:hamoo@i-sh.co.kr)로 이메일로 질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

\* 서울특별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지원(☎02)6925-0990)

- (교육·컨설팅) 사업기초컨설팅 및 분야별 전문가 연계 심층 컨설팅 운영
- (교육·컨설팅) 신규·기존 사업자 매칭 노하우 전수 과정 운영
- (심사 지원) 심사 전 토지가 탁상감정평가 지원

임대료 탁상감정평가 지원(신청 이후 결과 통보)

